

고 시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- 101호

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건설부고시제428호(1979.11.22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2008-365호(2008.10.16)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11-157호(2011.06.16),서울특별시고시제2011-335호(2011.11.1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,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제2009-29호(2009.05.22)로 사업시행인가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제2012-26호(2012.04.27)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종로구 청진동 235-1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4년 10월 24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정비사업의 위치 : 종로구 청진동 235-1번지 일대
4. 사업시행면적 : 4,236.4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 :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
 -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(정자동)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4. 10. .
7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
 - 가. 대지및 건축시설의 규모(공급계획등)

토지이용현황(㎡)				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				
계	건축시설	정비기반시설		건축규모 (연면적,㎡)	공급계획(연면적,㎡)			
		도로	공원	업무시설 판매시설	계	토지등 소유자	체비지 (일반분양)	보류시설
4,236.4	3,666.3	570.1	-	51,119.86	51,119.86	24,742.44	26,377.42	-

※ 건축물 층수 및 높이 : 지상25층 지하6층, 높이 110m

나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: “별첨”

8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☎2146-2675). 끝.